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8.9.18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독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/ 성동구 성수동 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9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경관·건축·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.

< 경관 분야 >

- 인접 단지와 차별화된 입면 계획은 (대안2)로 하고, 각 주동 모서리 수직부분을 적벽돌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개선 바람.

< 건축 분야 >

□ 건축계획

- 공공청사 출입구는 각각부 계단, 승강기를 포함 정형화된 코어 및 평면계획이 되도록 원안의 틀에서 계단 및 승강기가 추가되도록 조정 바람.
- 왕십리로변 측면 커튼월 룩 입면계획은 측벽으로 안 보이도록 실제 개구부(발코니 등)를 두어 개방성 확보 바람.
-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

□ 구조

- 구조안전 계획이 103동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동들도 구조계획시 추가 바람.
- 지상3층 전이플레이트와 지하3층 전이매트 기초를 일체로 거동하기 위해 TC가 과대계획 될 수 있으므로 구조 계획 수정 바람.

- 계속 -

2018.9.18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8.9.18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독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/ 성동구 성수동 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9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경관+건축+교통 심의

< 건축 분야 >(계속)

□ 방재

-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수정 바람.
- 계단실의 EPS/TPS는 계단실 외부로 변경 바람.
-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주변의 방화문은 셔터 직근에 식별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개방방향은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.
- 비주거시설 및 공공청사의 기계실/전기실로의 별도 수직 동선 확보 바람.
- 유틸리티 출입구의 주차면 조정으로 출입동선 확보 바람.
- 발전기실 등은 구획된 실을 경유하지 않고 복도 또는 통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바람.
-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면한 샤프트는 별도 방화구획하기 바람.
- 소방차량 부서공간 주변의 가로수 식재로 추후 소방차량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바람.
- 소방차량 동선은 대형차량의 회전에 충분한 가각을 확보하고 32톤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조정 바람.

< 교통 분야 >

- 도로횡단면 B-B'에 대하여 측구가 대지 내 위치하고 있어,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(지상권 설정 또는 차도폭 조정 등) 강구 바람.

- 계속 -

2018.9.18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8.9.18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독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/ 성동구 성수동 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9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

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주거 우수(그린2)등급, 비주거 우수(그린2)등급 적용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주거 1등급, 비주거 1등급 적용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.97%, 판매 및 근생 8.45%, 공공청사 23.21% 적용.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8.9.18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